제18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(제2차 본회의)
2012. 2. 27.(월) 10 : 00~

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

【 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】

총 무 위 원 회

【목　　차】

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------ 2

<의안번호 제2012 - 5호>

거창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2년 2월 13일

나. 제 출 자: 강철우・강창남・이애숙

다. 회부일자: 2012년 2월 14일

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2년 2월 27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의거,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,

○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을 종전에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가 사망시 화장한 경우에서, 타지역에 연고를 둔 미혼자 및 군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에 대해서도 화장장려금 지급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,

○ 특히, 화장후 자연장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원 할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, 매장중심의 장례문화를 화장중심으로 유도함은 물론 국토의 잠식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**화장장려금 지원대상 (안 제3조)**

-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,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.
- 타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(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)가 본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.
- 거창군의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.

○ 지원제외 대상 (안 제4조)

- “장사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.
- 그 밖의 다른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.
- 사태(死胎) :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

○ 지원기준 (안 제5조)

- 화장 장려금은 사망자 1인당 30만원으로 하며, 개장후 화장장려금은 10만원 추가지급, 화장후 자연장도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까지 지원

○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(안 제8조)

-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
- 사망자 및 개장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때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본안은 현재 군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이, 우리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자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,

○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미혼자인 경우와 관내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할 경우에 대해서도 해당 연고자에 대하여 화장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,

○ 특히, 도내에서도 우리군의 화장율이 낮은점을 감안하여, 기존 화장 장려금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현실화 시키고, 화장 후 자연장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원 할 수 있게 개정함으로써,

○ 매장중심의 장례문화를 화장중심으로 유도하여 국토의 잠식을 최소화 하는데 기여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,

○ **상위 법령을 살펴보면,**

- **지방자치법 제15조**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 라고 규정되어 있고,
- **장사등에관한 법률 제4조**에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·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·시행하여야 한다.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,

○ 이 개정 조례는 주민에게 수혜를 주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,

○ 내용을 살펴보면, 화장을 하고자 하는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통해 화장률을 제고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